

의안번호	2201369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계번호	24A1558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 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	세입세출결산에 첨부해야 하는 부속서류 2종 추가 － 인구변화인지 결산서,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 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인쇄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할 수 있음
 -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가회계제도 운영비 중 국가결산보고서(부속서류 포함 총 136종¹⁾)의 부속서류 1종당 인쇄비 예산은 2,302,614원임

1)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총 15종이며 종별 권수를 적용하면 총 136권이며, 136종에 대한 2024년 인쇄비 예산은 총 313,155,500원으로 결산보고서 1종당 인쇄비는 2,302,614원임(기획재정부,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II-1): 일반회계·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, 2024, p.388.)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,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인 2026년 결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10억원 미만(연평균 4.6백만원)으로 예상되며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등 2종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추가	4.6	4.6	4.6	4.6	4.6	23.0	4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국회예산정책처	추계세제총괄과
과 장	권아영
추계세제분석관	태정립
연 락 처	02-6788-4652
	jitae@nabo.go.kr